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9. 9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. 9. 2. 김영미 의원 외 17명
- 나. 회부일자 : 2020. 9. 3.
- 다. 상정일자 :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(2020. 9. 9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의원

### 1) 제안이유

마포구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제도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을 보완하고자 함.

### 2)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9조제3항: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“위촉할 수 있다” 를 “위촉해야 한다”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.

### 3. 검토의견(신준호 전문위원)

#### 1) 조례 개정 배경

-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된 이후 마포구 주관 셉테드(CPTED)<sup>2)</sup> 사업 추진 시 경찰과의 협업 프로세스 정착을 위하여 제안되었음.

#### 2) 주요 조문 검토

-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·운영에 있어서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 (안 제9조제3항)

#### 3)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제정(2018.5.3.) 시행된 이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위원회가 지역 경찰과의 협력이 미비하고 활동이 저조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의된 사항으로,
-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 경찰과의 협력 프로세스 정착을 위해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임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임.
- 이는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의 기초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디자인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, 전문성이 확보된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 기능이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- 현재까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개최 및 사업 건수는 없으며,

2) 범죄예방환경설계((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; CPTED)

조례 제정 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차원의 벽화 사업은 아래와 같이 3건이 있음.

구분	사업명	위치	소요예산	사업기간
1	아현동 마을길 벽화 재생사업	마포대로 11길 73 공덕현대아파트 앞 옹벽	10,000천원	2019.8.~12.
2	연서지하보도 벽화 조성사업	성미산로 23길 78 인근 옹벽	9,000천원	2017.3.~6.
3	희망의 벽화공원 조성사업	성산로2길 마포구청역 3번 출구 앞 옹벽	22,000천원	2017.12.~ 2018.6.

〈표 1. 마포구 범죄예방 디자인 시행 내역〉

- 향후, 집행부에서는 관내 범죄예방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방범 시설 설치 등의 건축허가 조건을 개선하고 탄력 순찰과 같은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관내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음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
**8. 기타사항 : 없음**